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2.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6. 5. 강승규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6. 1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16회 국회(임시회)

제2차 전체회의(2024.7.24.) : 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

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부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법안심사소위(2024.9.25.) : 상정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3차 법안심사소위(2024.11.26.) : 상정

제420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소위(2024.12.18.) : 상정 · 축조심사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안심사소위(2025.2.6.) : 상정 · 축조심사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2차 법안심사소위(2025.11.26.) : 상정 · 축조심사

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10차 전체회의(2025.11.27) : 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

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강승규의원)

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이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음. 따라서,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·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한 시점임.

이에 지역 주도의 지역인재양성 추진과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천우정)

개정안은 RISE 체계의 근간이 되는 ‘지방으로의 권한 이양’을 실행하는 의미에서 지역의 대학 지원과 관련된 계획을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게 하고,

중앙과 지역에 각각 대학·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와 지역고등교육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며, 전담기관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하게 하고,

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글로벌대학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주도로 대학지원 사업이 추진되던 기존에 비하여 지역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서 지역의 개별적인 특성과 수요를 보다 면밀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, 신속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적기에 대학이 원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고민정)

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

법률 전부개정법률안」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 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대안반영 폐기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 폐기